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88
------------	------

2025년 3월 5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황철규 의원 등 30명
2.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철규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함(안 제8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 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황철규 의원 등 30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388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위

원회로, 정책 결정자에게 조언·설명·연구수행 등의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은 관련 법령¹⁾ 또는 교육부 정책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조건에 처해있는 여러 교육청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²⁾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단편적인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총괄적인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그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해 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관리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의 제도적 장치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해촉과 운영 등 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사안 처리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감에게 자문을 제공할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향후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안 제9조는 학교폭력 관련 교사 및 공무원, 학생,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9조제2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직제명³⁾을 고려했을때 ‘평생진로국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에 의한 지원 및 가·피해학생 분리조치(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제1항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⁴⁾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13조제1항은 피해자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더불어 학교장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제1항에 학교장에게 피해자 지원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바, 동 조문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제2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 동의 없으면 가·피해학생을 서로 마주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치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제5호⁵⁾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가·피해학생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외부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간혹 가·피해학생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외부기관이 있어 가·피해학생의 동선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는바,

동 조문은 가해학생 프로그램과 피해학생 심리치유 진행 중에도 가·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2차 피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사

5)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료됩니다.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피해학생의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각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규정이 부재하고, 이처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하도록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측면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⁶⁾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리조치하여야 하고, 분리기간 역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⁷⁾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13조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안 제2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3조는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⁸⁾에 따라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페이지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을 위해 수업시수 지원, 마음치유 연수, 법률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표-1]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 정책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수업시수 지원	- 사업명: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 목적: 수업시수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 대상: 학교 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등) - 지원 범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당 3,625천원(25,000원×5시간×29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법률 지원	- 사업명: 교원안심공제 - 목적: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률 지원 - 내용: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 법률 자문 수시 지원 - 방법: (소송비)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 (법률자문)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 이러한 정부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 악성민원 증가, 교권침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평생진로국장” 을 “평생진로교육국장” 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조치하여야 한다” 를 “조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88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제2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직제명을 고려했을 때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정정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피해학생의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상 위법 위임 없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측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리조치 해야하고, 그 기간 역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3조제2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조치하여야 한다” 를 “조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조치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u>평생진로국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u>평생진로교육국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생략) 1. ~ 8. (생략) <신설>	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u>조치하여야 한다.</u>	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u>조치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8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0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9조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공무원
3.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찰공무원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검사·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은”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8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 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u><신 설></u>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현행	개정안
	<u>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u>2. 교육공무원</u> <u>3.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u> <u>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u> <u>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u> <u>6. 경찰공무원</u> <u>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u> <u>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u> <u>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u> <u>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u> <u>11. 판사·검사·변호사</u> <u>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u>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u>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13. 그 밖에 <u>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u>교육감은</u>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지원할 수 있다</u>. 1. ~ 8. (생략) <u><신설></u> 제8조의2 ~ 제14조 (생략) <u><신설></u>	<u>찬성으로 의결한다</u>. ② <u>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u>. ③ <u>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제13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u>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 지원하여야 한다</u>. 1. ~ 8. (현행과 같음) ② <u>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u>. 제14조 ~ 제22조 (현행 제8조의2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2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u>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u>

현행	개정안
<u>제15조</u> (생략) <u>제16조</u>(표창) ① (생략)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u>제8조의2</u>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u>제17조</u> (생략)	<u>한다.</u> <u>제24조</u> (현행 제15조와 같음) <u>제25조</u>(표창)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4조</u>----- ----- ----- ----- ----- -----. <u>제26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